

소프트웨어교육센터 운영 규정(4-2-00)

제정일 : 2018. 08. 14.

제1조(명칭 및 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센터의 사업·조직 및 정원 등 제반 운영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센터는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내 재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2.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의 초·중·고교 교육지원 및 대외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
3. 소프트웨어에 기초하는 코딩, APP개발 교육과정 등 관련 제분야 연구 및 수익 창출에 관한 사항
4.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제3조제2항의 각호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③ 센터의 고유직무수행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둔다. 주임교수는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교육개발 및 교육운영을 수행한다.

④ 센터에는 팀장,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주임교수의 직무수행을 지원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위원 위촉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하되 센터장과 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고유직무에 관한 과제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, 평가에 관한 사항

2.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조(재정 운영) ①센터의 재정은 건양대학교(산학협력단 포함)의 운영지원금, 정부 및 지자체 기관, 산업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, 해당년도 추진 목표에 따른 재정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.

② 예·결산 및 재정집행은 건양대학교 회계처리지침에 따른다. 단 센터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 지침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본부의 승인을 통해 별도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